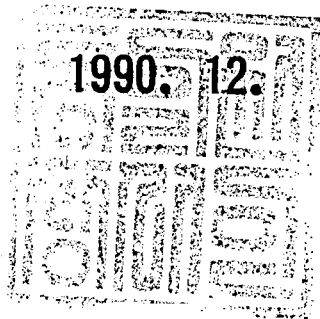


# 불가침조약의 개념과 북한의 「불가침선언」제의 검토



국토통일원



## 목 차

- I. 불가침조약의 개념 ..... 3
- II. 불가침조약의 선례와 현대적 의의 ... 12
- III. 남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 21
- IV. 북한의 「불가침선언」 초안 검토 ... 26



# I. 불가침조약의 개념

## 1. 불가침조약의 의의와 명칭

### 가. 불가침조약의 의의

(1) 불가침조약은 “불가침”에 관한 조약이다.

불가침조약은 조약의 당사자 상호간에 “침략”을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조약을 말한다. “침략”이란 용어 대신 “침범” 또는 “침입”이란 용어를 사용해도 “불가침” 조약이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토의 보전”, “국경선의 존중”, “무력의 불행사”, “전쟁의 포기”, “적대행위의 금지” 또는 “충돌의 회피”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이는 모두 “불가침” 조약이라 부른다.

(2) 불가침조약은 “조약”이다.

불가침조약은 침략을 금지하는 “조약”이

다. 조약이란 국제법의 주체간에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를 말한다.

국제법의 주체에는 국가·교전단체·국제조직·개인이 있으나 조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국제법의 주체, 즉 “능동적 국제법주체”는 국가·교전단체·국제조직이며, 개인은 “수동적 국제법의 주체”로서 조약의 당사자가 될 능력이 없다. 그리고 불가침조약은 능동적 국제법주체 중 국가와 국가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가와 교전단체간 또는 국가와 국제조직간에 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약은 “문서”에 의한 합의이며 구두에 의한 합의는 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조약이라고 부르지 아니한다.

능동적 국제법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인 한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조약이다. 조약의 명칭으로는 “조약” 이외에

“협약”, “협정”, “약정”, “합의서”, “의정서”, “잠정협정”, “규약”, “헌장”, “교환각서”, “선언” 등이 있다. 조약의 명칭에 따라 조약의 국제법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조약의 명칭 중에 “선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국제법상 “선언”이라는 용어는 “조약으로서의 선언”을 의미하는 경우와 “정책표명으로서의 선언”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1868년의 “페터스브르크선언”, 1907년의 “런던 선언”, 1956년의 “일·소 공동선언”, 1990년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의 “파리선언”은 “조약으로서의 선언”의 예이며,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은 “정책표명으로서의 선언”의 예이다.

실제에 있어서 어떤 “선언”이 “조약으로서의 선언”인지 “정책표명으로서의 선언”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양자의 구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조약으로서의 선언”과 “정책표명으로서의 선언”의 구별 기준

구분 구별 기준	조약으로서의 선언	정책표명으로서의 선언
의 사	조약체결의사 유	조약체결의사 무
내 용	권리·의무에 관 한 규정 유	권리·의무에 관 한 규정 무
형 식	조(條)의 형식 (제 1 조, 제 2 조 등)	항(項)의 형식( 1 항, 2 항 등)
절 차	비준서의 교환 유	비준서의 교환 무
효 력	법적 구속력 유	법적 구속력 무
위 반시	국제재판의 대상	국제재판의 비대 상



## 나. 불가침조약의 명칭

국제법상 불가침조약의 명칭은 여러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불가침”을 약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 그 명칭중에 “불가침”(non-aggression)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불가침조약인 것이다.

1923년에 미주 국가간에 체결된 불가침조약의 명칭은 “미주 국가간의 충돌회피·방지조약”(Treaty to Avoid or Prevent Conflicts Between the American States)이며, 1925년의 독일·벨지움·불란서·영국·이태리간에 체결된 불가침조약의 명칭은 “독일·벨지움·불란서·영국·이태리간의 상호보장조약”(Treaty of Mutual Guarantee between Germany, France, Great Britain and Italy)이며, 1970년의 서독과 폴란드간에 체결된 불가침조약의 명칭은 “서독과 폴란드간의 상호관계정상화조약”(Treaty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Poland Concerning the Basis for the Normalization of their Relations )이다.

또한 불가침을 약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 “조약”의 명칭이 조약·협정·협약·약정·의정서·합의서·규약·선언을 불문하고 불가침조약이다. 1984년 3월 16일에 남아프리카와 모잠비크간에 체결된 불가침조약의 명칭은 “합의서”(agreement)이며, 1924년 10월 2일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제네바조약 또한 불가침조약이나 그 명칭은 “의정서”(protocol)이다.

요컨대, “협정”, “선언” 등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와 국가 상호간에 불가침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인 한 모두 불가침조약인 것이다.

## 2. 불가침조약과 평화조약의 구별

불가침조약과 평화조약은 모두 평화를 목표로 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다음

과 같은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첫째, 불가침조약은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약이지만, 평화조약은 전쟁을 사후에 정리하는 조약이다.

둘째, 불가침조약은 평시상태에서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화조약은 전시 상태에서 체결되며 평화조약의 효력발생으로 전쟁은 종료된다.

셋째, 불가침조약은 국가와 국가간에 체결되지만 평화조약은 국가와 국가간에는 물론이고 국가와 교전단체간에도 체결된다.

넷째, 불가침조약은 현존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평화조약은 장래상태를 창설하는 것이다. 즉, 불가침조약은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지만 평화조약은 전시인 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 3. 불가침조약과 동맹조약의 구별

불가침조약은 전쟁을 방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동맹조약과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첫째, 불가침조약은 침략행위를 하지 말자는 소극적인 무작위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약이지만, 동맹조약은 상호 협력한다는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조약이다.

둘째, 불가침조약은 전쟁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조약이지만, 동맹조약은 전쟁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조약이다.

셋째, 불가침조약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즉 침략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조약이지만, 동맹조약은 현상을 변경하려는, 즉 무력적 공격의 상태를 배제하는 조약이다.

넷째, 불가침조약은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 대해 대항하려는 대항적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지만, 동맹조약은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 대해 대항하려는 대항적 성질을 가진 조약이다.

## Ⅱ. 불가침조약의 선례와 현대적 의의

### 1. 불가침조약의 선례

가. 1919년 이전의 불가침조약

(i) 1839년 7월 4일의 “과테말라와 살바도르간의 평화·우호조약”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Guatemala and Salvador) 제 3조.

(ii) 1855년 8월 30일의 “아르헨티나와 칠레간의 평화·우호·통상·항해 조약” (Treaty of Peace,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Argentina and Chile) 제 39조.

(iii) 1856년 2월 13일의 “과테말라와 혼두라스간의 평화·우호조약”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Guatemala and Honduras) 제 10조.

(iv) 1856년 7월 9일의 “에쿠아도르와 뉴그라나다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

vigation, Ecuador and New Granada ) 제 3조.

(v) 1859년 4월 1일의 “페루와 베네주엘라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Peru and Venezuela) 제 39 조.

(vi) 1862년 9월 20일의 “과테말라와 니카라구아간의 평화·우호·통상조약” (Treaty of Peace, Friendship and Commerce, Guatemala and Nicaragua) 제 7 조.

(vii) 1868년 7월 9일의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간의 경계조약” (Boundary Treaty, Argentina and Bolivia) 제 19 조.

(viii) 1870년 2월 10일의 “콜롬비아와 페루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Colombia and Peru) 제 32 조.

(ix) 1890년 3월 29일의 “에쿠아도르와 살바도르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Ecuador and Salvador) 제 1 조.

(x) 1902년 1월 20일의 “코스타리카, 혼두라스, 니카라구아, 살바도르간의 평화와 일반중재조약” (Treaty of Peace and General Arbitration, Costa Rica, Honduras, Nicaragua and Salvador) 제 11 조.

(xi) 1913년 9월 20일의 미국과 과테말라간의 평화 추진조약” (Treaty for the Advancement of Pe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Guatemala) 제 1 조.

(xii) 1914년 9월 15일의 “미국과 블란서간의 평화 추진조약” (Treaty for the Advancement of Pe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제 1 조.

나. 1919년 이후의 불가침조약

(i) 1919년의 “국제연맹규약”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제 12 조, 제 13 조, 제 15 조.

(ii) 1923년 5월 3일의 “미주국가간의 충돌회피·방지조약” (Treaty to Avoid



or Prevent Conflicts between the American States ) 제 1 조.

(iii) 1924년 8월 29일의 “독일과 스웨덴간의 중재·조정협약” (Convention of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between Germany and Sweden ) 제 23 조.

(iv) 1924년 10월 2일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제네바의정서” (Geneva Protocol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 제 2 조, 제 8 조.

(v) 1925년 10월 16일의 “독일, 벨지움, 불란서, 영국, 이태리간의 상호보장조약” (로카르노조약) (Treaty of Mutual Guarantee between Germany, Belgium, France, Great Britain and Italy ) 제 2 조.

(vi) 1926년 4월 22일의 “페르시아와 터키간의 불가침조약” (Treaty of Friendship and Non-Aggression between Persia and Turkey ) 제 3 조.

(vii) 1926년 8월 31일의 “아프카니

스탄과 소련간의 중립·불가침조약”(Treaty of Neutrality and Non-Aggression between Afganistan and U.S.S.R.) 제 2 조.

(viii) 1932년 2월 5일의 “소련과 라트비아간의 불가침조약”(Treaty of Non-Aggression between U.S.S.R. and Latvia) 제 1 조.

(ix) 1934년 1월 26일의 “독일과 폴란드간의 불가침조약”(Treaty of Non-Aggression between Germany and Poland) 제 1 조.

(x) 1936년 8월 22일의 “독일과 소련간의 불가침조약”(Treaty of Non-Aggression between Germany and U.S.S.R.) 제 1 조.

다. 서독과 동구제국간의 불가침조약

(i) 1970년 8월 12일의 “서독과 소련간의 조약”(Treaty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Soviet Union)

제 2 조, 제 3 조

(ii) 1970년 12월 7일의 “서독과 폴란드간의 상호관계 정상화조약” (Treaty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Poland Concerning the Basis for the Normalization of their Relations) 제 1 조, 제 2 조.

(iii) 1973년 12월 11일의 “서독과 체코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조약” (Treaty on Mutual Relations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Czechoslovakia)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라. 월남평화조약과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

(i) 1973년 1월 27일의 “월남에 있어서 전쟁의 종료와 평화회복에 관한 합의서” (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제 1 조.

(ii) 1979년 3월 26일의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평화조약”(Treaty of Peace between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the State of Israel) 제 2 조.

## 2. 불가침조약의 현대적 의의

전쟁의 자유와 중립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던 개별적 안전보장체제하에서 침략을 하지 말자는 불가침조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따라서 불가침조약체결의 전성시기는 개별적 안전보장체제하에서 집단적 안전보장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인 1920년대에서 1936년까지였다.

제 2 차대전 이 끝나고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체제의 확립으로 불가침조약은 별의의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집단적 안전보장체제하에서는 전쟁은 금지되고 중립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연합이 성립된 이후, 국제연합헌장에 의해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의 행사가 금지됨으로써, 불가침

조약체결은 별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국제연합이 성립된 이후 불가침조약 체결은 쇠퇴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에 와서 불가침조약은 불가침 이외에 특정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체결되게 된다. 1970년에서 1974년에 이르는 동안 서독과 소련, 서독과 폴란드, 서독과 체코간에 체결된 불가침조약은 “관계정상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요컨대, 오늘에 와서 불가침조약은 불가침 그 자체보다 관계정상화와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체결되고 있다. 1984년 3월 16일에 체결된 “남아프리카와 모잠비크간의 불가침조약”은 불가침 보다 선린관계 (good neighbourhood)의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오늘 남북한간에 제의되고 있는 불가침협정 또는 선언도 무력불행사 그 자체보다 남북한

간의 기본관계 설정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본다.

### Ⅲ. 남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 1. 남한의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북한은 1962년 6월 20일에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에서 “남북평화협정체결”을 제의했으며, 그후 계속해서 이를 반복해 왔다. 이에 대해 남한은 “남북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1974년 1월 13일 박정희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휴전협정효력존속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 나는 이 기회에 ‘남북간의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 하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불가침협정’은 그 골자를 서너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상호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여하한 경우에도 현행 휴전협정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이 세가지 골자가 포함된 불가침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서로 준수한다면 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은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그후에도 남한은 1974년 6월 23일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제 1주년 기념담화”를 통해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제의했다. 1974년 9월 21일 남북조절위원회 제 8차 부위원장회담을 통해 북한측에 대해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수락할 것을 촉구했으며, 1976년 5월 13일 외무부장관은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하면서 휴전협정의 대체를 위한 새로운 협정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977년 1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위원장대리는 성명을 통해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의 추진절차 등 제반문제의 토의를 제의했다.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 중에 남북한기본관계잠정협정의 체결을 제의했으며, 이에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휴전체제의 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1985년 7월 23일 남북국회회담 제1차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은 남북정부당국간에 불가침문제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을 촉구했다.

1987년 8월 3일 외무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남북불가침협정 체결·국제연합 가입·기존대화 재개·수자원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남북외무부장관회담을 제의했다.

1988년 6월 10일 제 3차 국제연합 군비감축특별총회에서 우리측 외무부장관은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한당국의 각료급회담에 호응해 올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1988년 10월 18일 노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이라는 제목의 국제연합 총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

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 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합니다” 라고 했다.

## 2. 북한의 불가침선언 제의

남한이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제의에 대해 불응하고, 대신 남북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하면서 의사를 굽히지 않자, 북한측은 남북불가침선언을 하자고 제의해 왔다.

1984년 1월 10일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대미평화협정 체결제의와 함께 남북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의해 왔다. 1985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 7기 제 4차회의는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하는 편지를 통해 남북불가침선언의 채택을 의제로 제시했으며, 1988년 7월 20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남북국회연석회의에서 남북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의하면

서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보내왔다. 이 초안은 전문과 7개항으로 되어있다. 제 1항은 “무력불사용과 불가침”, 제 2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 3항은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행위에 불가담”, 제 4항은 “군사분계선에 의한 남북경계”, 제 5항은 “군비축소, 외국군대·핵무기 철거”, 제 6항은 “완충지대와 중립국감시군”, 제 7항은 “불가침선언에 반하는 기체결조약의 효력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0년 10월 17일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인 평양회담에서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된 새로운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 초안”을 우리측에 제시했다.

## Ⅳ. 북한의 「불가침선언」 초안 검토

### 1. 구 성

#### 가. 북남불가침공동선언(초안)

1988년 7월 20일에 북한측이 우리측에 제의해 왔던 “북남불가침공동선언(초안)”은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력불행사와 불가침
2. 분쟁의 평화적 해결
3.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에 불가담
4. 불가침의 경계선
5. 무력의 단계적 축소와 외국군과 핵무기의 단계적 철수
6. 완충지대의 설치와 중립국 감시군 주둔
7. 기체결조약에 무영향

#### 나.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

1990년 10월 17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우리측에 제

시한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은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 7·4 공동성명의 3 원칙을 재확인 · 준수하고 상대방의 사상 · 제도를 인정 · 존중하며 상대방 내부문제에 불간섭할 것을 약속

제 1 조 : 무력불행사와 불침해

제 2 조 :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 3 조 : 불가침의 경계선

제 4 조 : 군비경쟁중지와 무력감축

제 5 조 : 군사당국자간에 직통전화 설치

제 6 조 : 합의에 의한 수정보완

제 7 조 : 통고문의 교환에 의한 효력발생과 폐기권의 통고

위에서 본 불가침에 관한 북한의 두개의 선언(초안)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 성 격

1988년 7월 20일에 북한측이 제의한 “북

## 북한의 북남불가침선언(초안)의 비교

사 항	88년불가침 공동선언 (초안)	90년불가침 선언 (초안)
통일 3원칙 (7·4 공동성명)		(전문)
체제인정		(전문)
내부문제불간섭		(전문)
무력 불행사	( 1 항 )	(제 1 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 2 항 )	(제 2 조)
불가침의 경계선	( 4 항 )	(제 3 조)
군비경쟁중지와 무력감축	( 5 항 )	(제 4 조)
군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		(제 5 조)
합의에 의한 수정		(제 6 조)
통고문의 교환 발효		(제 7 조)
완충지대와 중립국감시군	( 6 항 )	
외국침략가담금지	( 3 항 )	
기체결 조약에 무영향	( 7 항 )	

남불가침공동선언(초안)”은 그 법적 성격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책표명으로서의 선언”인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서의 선언”인지 불분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은 그 성격이 “조약으로서의 선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내용상으로 보아 “약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 4 조), “폐기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7 조).

둘째로, 형식상으로 보아 “제 1 조”, “제 2 조” 등 “조(條)”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項)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셋째로, 절차상으로 보아 비준서에 해당하는 “통고문의 교환”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선언으로 효력을 발생하

도록 하고 있지 않다.

### 3. 명 칭

북한측이 1990년 10월 17일에 제시한 불가침에 관한 초안의 명칭은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이다.

첫째로, “불가침”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못하다. “불가침”은 “침략을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며, “침략”은 국가와 국가간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국가와 교전단체간에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 대한민국과 교전단체인 북한간에 “침략”은 성립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침”이란 용어 보다는 “무력불행사”, “무력행사포기” 등의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선언”이란 명칭도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불가침선언이 “7·4 남북공동성명”과 같이 “정책 표명으로서의



선언 ”으로 이해되어 이 불가침선언이 7·4 남북공동성명을 대체하는 것인가 또는 이를 보완하는 것인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동 초안의 법적 성격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북측이 제시한 초안의 법적 성격은 “조약 ”이나, “선언 ”이란 명칭은 “정책표명으로서의 선언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선언 ”보다는 “협정 ” 또는 “합의서 ”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 4. 전 문

전문은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가시고 전쟁을 방지하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일치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7·4 공동성명에 밝혀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하며 상대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을데 대하여 확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첫째로, “전쟁을 방지하며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1950년 6월 25일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전쟁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을 방지하며”를 “무력충돌을 방지하며” 또는 “적대행위를 방지하며” 등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라는 표현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정치적 측면에서 보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사상과 제도를 북한으로 부터 인정받는 이익은 별로 없고,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과 제도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실이될 뿐 아니라, 이는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 보아도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 헌법 제 4 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체제” 인정과 “실체” 인정도 구별하여야 한다. 전자는 “사상과 제도”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며, 후자는 “법적주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북한의 “법적 주체”를 “국가”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교전단체” 또는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인 “사상과 제도”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체제 또는 실체 인정은 우리가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 포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지만, 법적 측면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 5. 제 1 조

제 1 조는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규정은 검토를 요한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는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어 있다. 국제연합헌장 제 51 조도 자위권의 행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는 자위권의 행사도 금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불가침선언을 위반한 것이라고 북한이 국제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는 삭제되어야 하며 그대로 이를 수락할 수 없다.

둘째로, “상대방을 반대하여”라는 규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상대방에 대하여”가 아니라 “상대방을 반대하여”로 규정하고 있

는 것은 상대방 이외의 제 3국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무력행사의 상대방을 남한과 북한 상호간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우방국 기타의 국가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는 국군이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강제조치에 참가하는 것과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려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반대하여”라는 표현은 우리측에서 수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상대방에 대하여”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침해”에 관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불가침조약에서는 “침략” “침범”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침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침해”란 “침략”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각기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권리나 이익을 해치는 모든 경우는 여기 “침해”에 해당된다. 그러

므로 북한은 남한이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이를 불가침선언의 위반이라고 국제적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침해하지 않는다”는 “침범하지 않는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6. 제 2 조

제 2 조는 “북과 남은 있을 수 있는 의견상 이와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는 별로 문제되는 것이 없다.

## 7. 제 3 조

제 3 조는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의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서 첫째로 문제되는 것은 “불가침”에 관해서이다. “불가침”은 “침략하지 아니

한다”는 뜻이며, 여기서 “침략”은 국가와 국가간에 성립되는 개념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이다. 따라서 “불가침”이란 용어는 “무력불행사” 또는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등의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로 해상경계선을 휴전협정에서 규정하지 못했으므로 불가침선언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으면 해상경계선에 관해 서해 5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해상경계선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 8. 제 4 조

제 4 조는 “북과 남은 호상 불가침에 관한 약정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를 수락하는 것은 표면상으로 보아 별문제가 없는듯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 “군비경쟁을 중지하며”라는 규정

은 우리측이 수락할 수 없는 규정이다. 우리측은 단순한 숫자로 보아도 아직 북한의 군비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 균형감축”의 개념으로 볼 때 동조를 수락하는 것은 우리측에게만 의무를 지게하는 것이며, 북한측은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므로 이는 수락할 수 없는 규정이다.

둘째로, “무력”을 단계적 축감한다는 규정을 보건데, “무력”은 병력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이는 “무장병력” 즉 “무기와 병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기”가운데에는 재래식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가 포함되며, “병력”가운데는 우리 국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근거는 “휴전협정”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따라 주한미군철수와 핵무기 철거를 우리측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초안 제 4 조의 “무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규정은 수정없이는 우



리측이 받아 들일 수 없는 규정이다. 우리측이 주한미군철수와 핵무기철폐의 정책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의 수락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과 사전협조를 요하는 사항이며,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이다.

## 9. 제 5 조

제 5 조는 “북과 남은 당면하여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것으로 동조의 수락에는 별문제가 없다.

## 10. 제 6 조

제 6 조는 “이 불가침선언은 북과 남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조의 규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불가침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일정한 기간마다 수정·보충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11. 제 7 조

제 7 조는 “이 선언은 북과 남이 각각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통고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조국통일이 실현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어느 일방이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에 관해서 보건데, 이 규정은 어느 일방도 아무 이유 없이 필요하다면 폐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폐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인지 불분명하다. 전자의 경우라면 이 불가침선언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라면 이 규정이 없어도 일반국제법상 폐기권이 인정되므로 이 규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조국통일이 실현되는 날까지”라는 규정을 보건데, 조국통일이 실현되면 동선언의 당사자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 선언은 당연히 소멸되게 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또한 장차 평화조약이나 민족공동체헌장 등이 체결되게 될 때, 불가침선언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를 평화조약 또는 민족공동체헌장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